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연월일	2022. 3.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22. 3.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022. 1. 13. 字 시행) 및 「지방자치법시행령」(2022. 1. 13. 字 시행) 전부개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용어수정 및 올바른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시민에게 보다 적법하고 알기 쉬운 규칙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불부합 규정 개정
(안 제1조, 제14조제2항, 제76조제1항, 제88조제1항 및 제3항)
- 띄어쓰기 및 용어수정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 제83조, 제91조, 제95조, 제98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로 한다.

제2조 중 “임기초”를 “임기 초”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초”를 “초선, 재선, 다선 의원 순으로 배정하되, 당선 횟수가 같은 의원은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의장순”을 “의장 순”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총선거후”를 “총선거 후”로, “선거후에”를 “선거 후에”로 한다.

제5조 중 “임기초”를 “임기 초”로 하고, 같은 조 중 “주민앞에”를 “주민 앞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출 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일 이내”를 “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유없”을 “이유 없”으로, “2일이상”을 “2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를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최다선의의원, 최다선의의원”을 “최다선 의원, 최다선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지·비방하는”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장선거일”을 “의장 선거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선거후”를 “총선거 후”로,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집회후”를 “집회 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의된”을 “부처진”으로, “회기중”을 “회기 중”으로 한다.

제13조 전단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휴회중이라도”를 “휴회 중이라도”로, “인정할때”를 “인정할 때”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개의일시·부의안건”을 “개의일시·회의에 부처진 안건”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부의한다”를 “안건을 부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휴회중”을 “휴회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이유없이 그 기간내”를 “이유 없이 그 기간 내”로, “본회의에 부의할”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칠”로 한다.

제24조 중 “동의자의 1인이상”을 “동의자 외 1인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찬성없”을 “찬성 없”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후단 중 “2건이상”을 “2건 이상”으로, “할수”를 “할 수”로 한다.

제29조 중 “받은후”를 “받은 후”로 한다.

제30조 중 “본회의는”을 “본회의에서”로, “조항·문구 숫자”를 “조항, 문

구, 숫자,”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그외”를 “그 외”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의제외 발언의 금지)”를 “(의제 외 발언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제외”를 “의제 외”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발언회수의 제한)”을 “(발언횟수의 제한)”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단서 중 “질의·보충 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 발언시간”을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심의중”을 “심의 중”으로 한다.

제38조 중 “소수의견자”를 “소수 의견자”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끝날때”를 “끝날 때”로 한다.

제41조제2항 본문 중 “2인이상”을 “2인 이상”으로, “선포할수”를 “선포할 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6조제2항 중 “의원중”을 “의원 중”으로, “참여하에투·개표”를 “참여하에 투·개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다른의원”을 “다른 의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개”를 “2개 이상”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개”를 “2개 이상”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9호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쳐진 안건”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 의장”을 “의

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 의장)”으로, “2인이상”을 “2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회기동안”을 “한 회기 동안”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제·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복사, 사진촬영 등의 수단으로 다른곳에 옮겨서 보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55조 중 “1인이상”을 “1인 이상”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조례안”을 “조례안 및”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질의·토론 축조 심사”를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을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부의할”을 “회의에 부칠”로, “다른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마침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마침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되기전”을 “되기 전”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0호 중 “부의할”을 “안건으로 부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들은후”를 “들은 후”로,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라한다”를 “라 한다”로, “부의한다”를 “안건으로 부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유없이 그 기간

내”를 “이유 없이 그 기간 내”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부의할”을 “안건으로 부칠”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72조의 제목 “(시장등의 출석요구)”를 “(시장 등의 출석요구)”로 한다.

제72조의2제1항 중 “관계 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본질문, 보충질문 구분없”을 “본질문과 보충질문 구분 없”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휴무토요일”을 “토요일”로, “서면답변서를 24시간(휴무토요일)”을 “서면 답변서를 24시간(토요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시장등의 발언)”을 “(시장 등의 발언)”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본문 중 “토론없”을 “토론 없”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폐회 중”을 “폐회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있기전”을 “있기 전”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피심의원”을 각각 “심사대상 의원”으로, 같은 항 중 “질병”을 “질병,”으로, “기일내”를 “기일 내”로 한다.

제77조제2항 단서 중 “기일내”를 “기일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본회의에 부의하여야”를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피심의원”을 “심사대상 의원”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피심의원”을 각각 “심사대상 의원”으로 한다.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문란시키”를 “문란하게 하”로 한다.

제81조 중 “의원·관계공무원”을 “의원,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6조제6호 중 “허가없”을 “허가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회의장내”를 “회의장 내”로 한다.

제87조의 제목 “(녹음·녹화등)”을 “(녹음·녹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매회기초”를 “매 회기 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장내”를 “회의장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소속위원중”을 “소속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바로 부의할”을 “안건으로 바로 부칠”로 한다.

제89조제1항 전단 중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의”를 “안건으로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의한”으로, “알게된 날로부터 5일이내”를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를 “지체 없이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로 한다.

제93조 부칙 외의 부분 중 “제76조”를 “제88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83조 ----- ----- ----- ----- ----- -----.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조(등록) ----- ----- <u>임기 초</u> ----- ----- -----.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을 향하여 앞줄 오른쪽부터 <u>초.재선 다선 의원순으로</u> 배정하되, 당선 횟수가 같은 의원은 <u>성명의 가.나.다순으로</u> 배정한다. 다만, 의장단은 다선의원 다음에 부의장, <u>의장순</u> 으로 배정한다.	제3조(의석배정) ----- ----- <u>초선, 재선, 다선 의원 순으로</u> 배정하되, 당선 횟수가 같은 의원은 <u>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u> 배정한다. <후단 삭제> ---. --- <u>의장 순</u> ---.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u>총선거</u>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u>선거후</u> 에 개회	제4조(개회식) ----- ----- . ----- <u>총선거</u> 후 ----- ----- <u>선거 후에</u> ---

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생략)

⑤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

-----.

제5조(선서) ----- 임기 초-----

-----.

----- 주민 앞에 -----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제출하여야 ---.

②----- 5일 이내-----

③-----

----- 기간 내-----

④ (현행과 같음)

⑤----- 이유 없-----

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위원의 출석
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생
략)

② 제1항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
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
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
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
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
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
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
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
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
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
다.

④ · ⑤ (생 략)

⑥ 선거 당일에는 공정한 투표
를 위하여 제5항의 정견발표 외
에 질의·토론 등 일체의 발언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정견발표

----- 2일

이상 -----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

-----.

③-----

----- 최다선 의원,

최다선 의원-----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에도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
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
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
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2조(회기) ① (생 략)

②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개의) 본 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
략)

----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
-----.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
장 선거일-----

-----.

②-- 총선거 후 -----
----- 폐
회 중-----

-----.

제12조(회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회 후 ----
-----.

③ (현행과 같음)

④---- 부쳐진 -----
----- 회기 중----
-----.

제13조(개의) 본회의-----

----.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
행과 같음)

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5조(휴회) ① (생략)

②휴회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
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
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
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
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②·③ (생략)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제출할 의안은 회기 개시 7일전
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
하여 심사한다. 다만, 의장이 판

②-----

----- 제72조제1항-----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휴회) ① (현행과 같음)

②휴회 중이라도 -----

----- 인정할 때 -----

-----.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
-- 개의일시·회의에 부쳐진
안건-----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7일 전-----

-----.

단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
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
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
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
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
부할 수 있다.

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
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닐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
를 결정한다.

제22조(심사기간) ① (생 략)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
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

----- 안건
을 부친다. ----- 휴회 중--

-----.

②-----

----- 소관 상임위원회--
-----.

제22조(심사기간) ① (현행과 같
음)

②----- 이유
없이 그 기간 내-----

----- 본회의 안건으
로 부칠 --.

제24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
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의 1인이
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5조(수정동의)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
유를 붙여 재적 의원 4분의 1이
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
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④ (생략)

제28조(안건심의) ① (생략)

②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
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2건이상의 안건
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수 있다.

제29조(재회부) 본회의 또는 위원
장의 심사보고를 받은후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
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
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

제24조(동의의 의제성립) -----

----- 동의자 외 1인 이
상-----.

제25조(수정동의) ①-----

----- 1 이
상-----
-----.

②-----
--- 찬성 없-----.

③·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안건심의) ① (현행과 같
음)

②-----

----- 2건 이상-----
----- 할 수 --.

제29조(재회부) -----
----- 받은 후 -----

할 수 있다.

제30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
안의 의결이 있는 후 서로 저촉
되는 조항·문구 숫자 기타의 정
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
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
다.

제32조(발언의 허가) ①·② (생
략)

③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
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
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
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
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모
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
서는 아니된다.

② (생 략)

제36조(발언회수의 제한) (생 략)

제37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
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 발언.

-----.

제30조(의안의 정리) 본회의에서

--- 조항, 문구, 숫자, -----

---.

제32조(발언의 허가)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그 외-----

-----.

제35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 의제 외-----

--- 아니 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발언횟수의 제한) (현행과
같음)

제37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

----- 질의 · 보충발언 ·

<u>의사진행발언 및 신상 발언시간</u> 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u>범위안</u>에서 이 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7조의2(5분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 의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u>범위안</u>에서 의원에게 의 회가 <u>심의중인</u> 의안과 청원 기 타 중요한 시정의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 (이하"5분자유발언"이라 한다) 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8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u>소수의견</u> <u>자</u>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의장의 토론참가) ①의장 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 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전	<u>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u> -----. ②----- ----- ----- <u>범위 안</u>----- -----. 제37조의2(5분자유발언) ①----- ----- ----- ----- <u>범위 안</u>----- --- <u>심의 중</u>-----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보충보고) ----- ----- <u>소수 의견</u> <u>자</u>----- ----- ----- -----. 제40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 -----
--	---

에 대한 표결이 끝날때까지 의
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생략)

제4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생략)

②의원 2인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
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신설>

② ~ ④ (생략)

제46조(투표절차) ① (생략)

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
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
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투·개
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생략)

④감표위원은 다른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7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
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

----- 끝날 때-----
-----.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현행과 같음)

②---- 2인 이상-----

----- 선포할 수
----. -----

----. <후단 삭제>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투표절차) ① (현행과 같
음)

②----- 의원 중

----- 참여하에 투·
개표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른 의원 -----
-----.

제47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 2개 이상----

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u>각호</u>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 2. (생략) 3. 의원의 수정안이 <u>수개</u>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생략) 제49조(회의록의 작성) 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 8. (생략) 9. <u>부의안건</u>과 그 내용 10. ~ 14. (생략) ② (생략) 제50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u>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 의장과</u> 의회에서 선출된 <u>2인이상</u>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u>한회기동안</u>만 서명 날인한다. ② (생략)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생략)	----- -- <u>각 호</u>----- -----. 1. · 2. (현행과 같음) 3. ----- <u>2개 이상</u> ----- -----.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회의록의 작성) ①----- -----. 1. ~ 8. (현행과 같음) 9. <u>회의에 부쳐진 안건</u>----- ----- 10.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 <u>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 의장)</u>----- ----- <u>2인 이상</u>----- -----. ----- <u>한 회기 동안</u>----- -----.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현행과 같음)
--	---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포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생략)

제55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6조(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

②-----

--- 아니 된다.

③-----

---- 복사, 사진촬영 등의 수단으로 다른곳에 옮겨서 보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아니 된다. ---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위원회에서의 동의) ----

--- 1인 이상-----
-----.

제56조(위원회의 제안) ①-----

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7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
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
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한
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창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8조(위원의 발언) ①위원은 위
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
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
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61조(연석회의) ① (생략)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
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야 한다.

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

--- 조례안 및 -----
-----.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위원회의 심사) ①-----

----- 질의·
토론 및 축조 심사-----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위원의 발언) ① -----
----- 회
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
-----.
-----.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연석회의) ① (현행과 같
음)
②-----
----- 회의에 부칠 -----
----- 다른
위원회의-----
-----.

③----- 소관 위원

회의 회의로 한다.

제62조(공청회) ①·② (생략)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제63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안전의 심사를 마친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전에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65조(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 9. (생략)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 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회-----.

제62조(공청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아니 된다.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되기 전-----

-----.

제65조(위원회 회의록) ①-----

-----.

1. ~ 9. (현행과 같음)

10. -----
----- 안전으로 부칠 -----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생략)

②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생략)

제67조(예산안 심의)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11. (현행과 같음)

②-----

-----.

-- 아니 된다.

③ (현행과 같음)

제67조(예산안 심의) ①-----

-- 들은 후 -----
----- 소관 상임위원회-----
-----.

②-----

----- "예결위원회"라 한다-----
----- 본회의 안건으로 부친다.

③----- 소관 상임위원회-----

-- 이유 없이 그 기간 내-----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9조(예산안의 의결) ①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1조(결산의 심사)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한 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2조(시장등의 출석요구) ① ~

③ (생략)

제72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의결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시

----.

제69조(예산안의 의결) ①-----

----- 안전
으로 부칠 -----
-----.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결산의 심사) ①-----

--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
고 소관 상임위원회-----
-----.

②-----

-- 본회의 안전으로 부쳐야 --
-----.

③----- 소관 상임위원

회-----
-----.

제72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72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 ①-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
(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본질문, 보충질문 구분없이 1문 1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다.

③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72시간(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시장은 서면답변서를 24시간(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3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

----- 관계공무원-----

-----.

②----- 본질문과 보충질문 구분 없-----

-----.

③-----

-----토요일-----

----- 서면 답변서를 24시간(토요일-----
-----.

제73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 지체 없-----
-----.

②-----

-----.

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4조(시장등의 발언) (생략)

제75조(사직) ① (생략)

②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

-----.

③ (현행과 같음)

제74조(시장 등의 발언) (현행과 같음)

제75조(사직) ① (현행과 같음)

②----- 토론 없-----
----- . ----- 폐회 중-----
-----.

③-----

--- 있기 전-----
--.

제7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법 제91조

----- 심사대상 의원-----

-----.

②심사대상 의원----- 질병, ----- 기일 내

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생략)

②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
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
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야 한다.

④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
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
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
할 수 있다.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
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
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7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일 내-----
-----.

③-----
-----.
----- 본회의의 안건으로 부
쳐야 --.

④-----

-- 심사대상 의원-----.

제7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심사대상 의원-----
-----.

②----- 심사대상 의원---

-----.
심사대상 의원-----
-----.

③<u>피심의원</u>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회의의 질서 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u>아니된다</u>. 1. ~ 5. (생략)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u>문란시키</u>는 행위 제8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u>의원·관계공무원</u>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5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u>각호</u>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제86조(방청인의 금지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 5. (생략) 6. 의장의 <u>허가없</u>는 녹음·녹화·	③<u>심사대상 의원</u>----- ----- ----- ---. 제80조(회의의 질서 유지) ----- ----- ----- ---- <u>아니 된다</u>. 1. ~ 5. (현행과 같음) 6. ----- ----- <u>문란하게 하</u>--- 제8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 ----- <u>의원, 관계공무원,</u> -- ----- ----- -----. 제85조(방청의 제한) ①--- <u>각 호</u> -----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6조(방청인의 금지사항)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허가 없</u>-----
---	---

촬영 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
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생략)

제87조(녹음·녹화등) ① (생략)

②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
는 자는 매회기초에 허가신청서
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
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
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
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
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
이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
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
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
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

7. 회의장 내 -----

8. (현행과 같음)

제87조(녹음·녹화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 매 회기 초-----

-----.

-----.

③-----

----- 회의장 내-----

-----.

④-----

----- 아니 된다.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8조-----

원회에 회부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생략)

⑤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9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제88조제1항과 제2항

-----.

②----- 소속위원 중-----

-----.

-----.

③-----

-----.

법 제95조

-----.

④ (현행과 같음)

⑤-----

-- 안건으로 바로 부칠 -----

-----.

제89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
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
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
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
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
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
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
다. 다만, 폐회 기간중에 징계대
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
야 한다.

제92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의
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
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
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3조(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 3일 이내-----

안건으로 부치는 --.

②----- 규정에 의한 --

-----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 ----- 기간 중-----

----- 3일 이내-----
-----.

제92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 지체 없이 본회의 안건으
로 부쳐 -----.

② (현행과 같음)

제93조(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에 관하여는 <u>제76조</u> 내지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등) ----- ----- <u>제88조</u> ----- <u>조</u> ----- ---.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